

고 시

◆ 노원구고시 제2026-40호

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5호(2005.2.5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제2008-37호(2008.2.5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08-46호(2008.8.7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96호(2013.3.28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5-32호(2015.7.23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5-51호(2015.11.12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8-32호(2018.3.15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18-131호(2018.12.13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9호(2020.6.25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노원구고시 제2021-160호(2021.10.21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, 노원구 고시 제2021-206호(2021.12.23.)로 정비구역(계획) (경미한)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(경미한)변경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28일

노 원 구 청 장

I.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)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공릉1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노원구 공릉동 758번지 일대	76,418.0	감) 1,759.8	74,658.2	노원구고시 제2021-206호 (2021.12.23.),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공릉1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- 어린이공원(마당공원)이 구역에서 제척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- 76,418.0㎡ → 74,658.2㎡ (감) 1,759.8㎡ - 이미 변경된 지번 반영 : 공릉동 230번지 → 공릉동 758번지	-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5호로 최초 결정된 마당공원의 재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인접 단지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공릉1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※ 이미 변경된 지번 반영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(변경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76,418.0	감) 1,759.8	74,658.2	100.0	-
주거 지역	소 계	59,235.5	-	57,475.7	77.0	-
	제2종일반주거지역	54,947.7	감) 1,759.8	53,187.9	71.3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4,287.8	-	4,287.8	5.7	-
녹지 지역	소 계	17,182.5	-	17,182.5	23.0	-
	자연녹지지역	17,182.5	-	17,182.5	23.0	-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기정	변경	변경내용	변경사유
제2종 일반주거지역	-	어린이공원(마당공원)을 구역에서 제척 - 면적 : 감) 1,759.8㎡	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5호로 최초 결정된 마당공원의 재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인접 단지 태릉우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고 공릉1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

※ 용도지구 : 해당없음(변경없음)

나. 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1) 도로 결정 조서(변경없음) - 생략

2) 공원 결정 조서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-	공원	소공원①	공릉동 230-2번지 일대	7,823	서고제2005-35호 (‘05.2.5)	변경없음
기정	-	공원	어린이공원 ②	공릉동 230-9번지 일대	1,759.8 (1,759.8)	서고제2005-35호 (‘05.2.5)	공릉1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(마당공원)
변경	-	공원	어린이공원 ②	공릉동 758-3	1,759.8 (-)	서고제2005-35호 (‘05.2.5)	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구역에 편입

※ ()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

■ 공원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원	어린이공원 ②	공릉동 758-3	구역에서 제척 - 감) 1,759.8㎡	- 어린이공원②(마당공원)의 재조성 및 관리를 위해 인접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 ※ 공릉1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※ 시설의 면적 및 위치는 변경 없음 ※ 이미 변경된 지번 반영

3) 사회복지시설(변경없음) - 생략

4) 공공문화체육시설(변경없음) - 생략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 - 생략

Ⅲ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기정/변경)

2.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/변경)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/변경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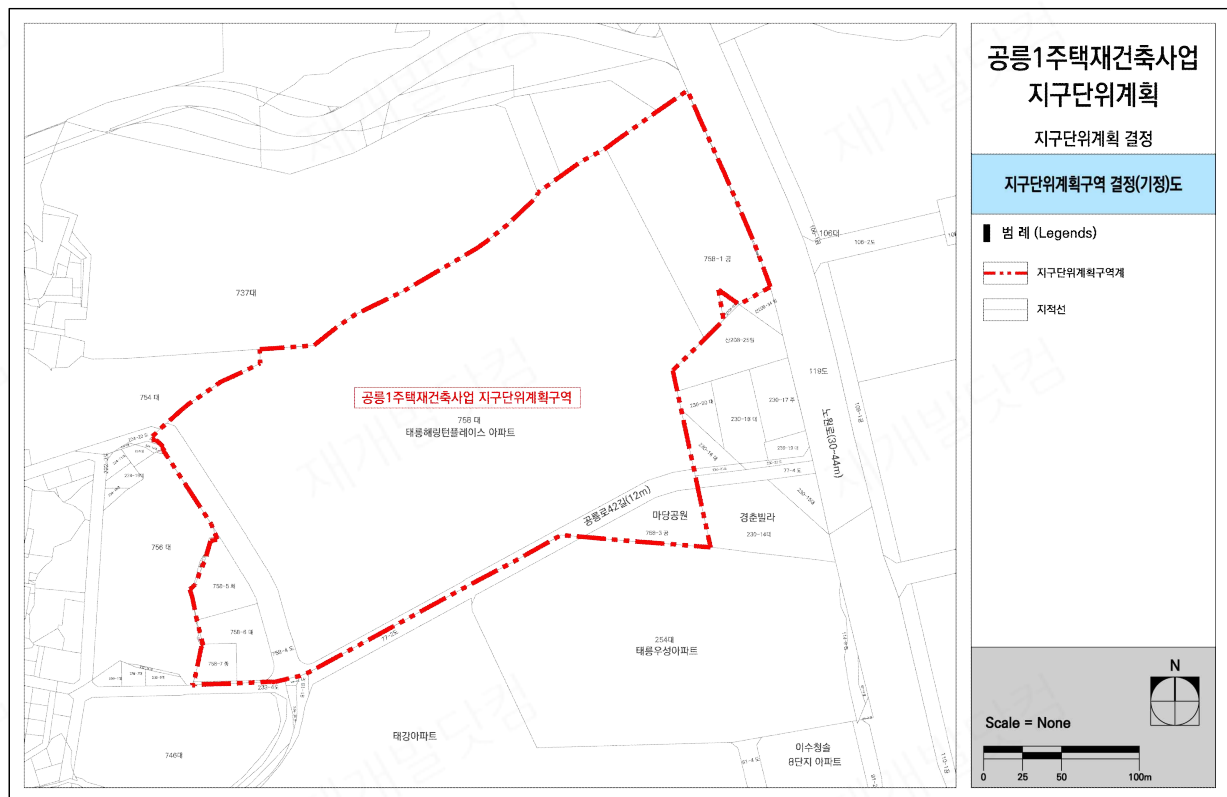
Ⅳ.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서 : 생략

V. 열람장소 :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노원구 재건축사업과(02-2116-3913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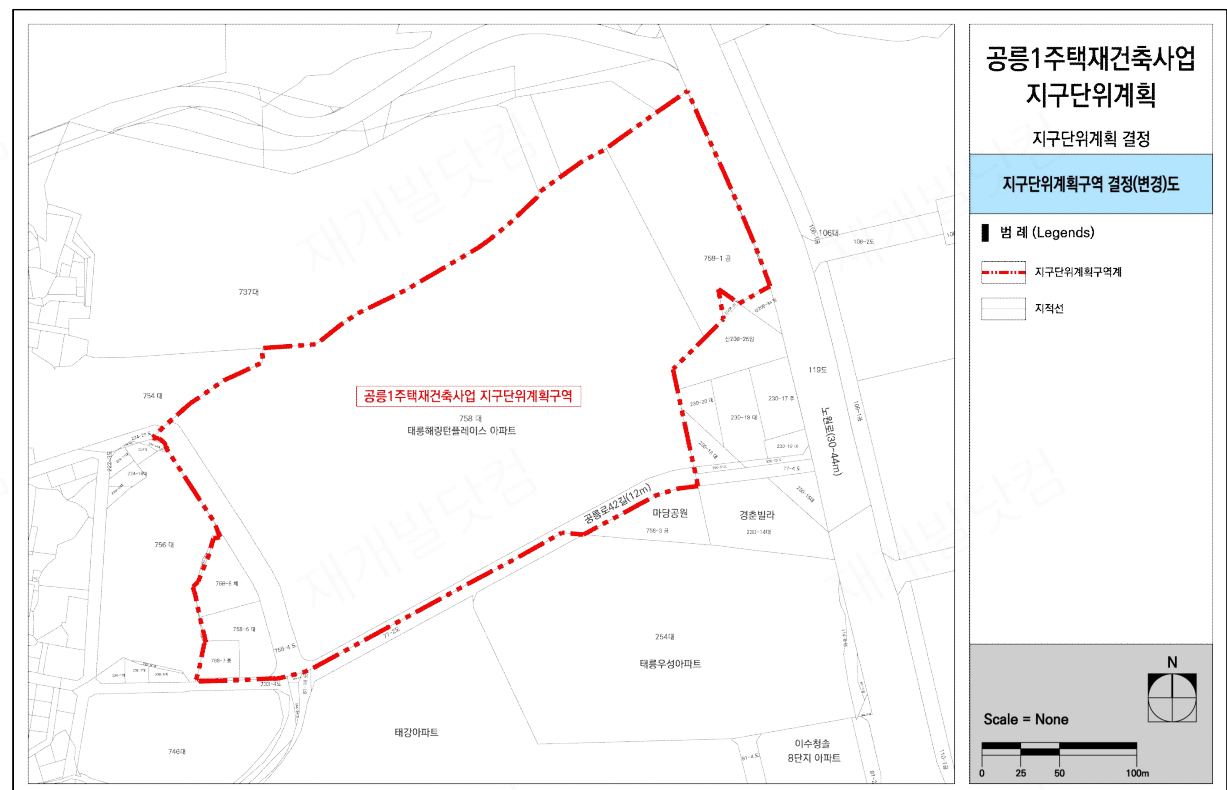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1>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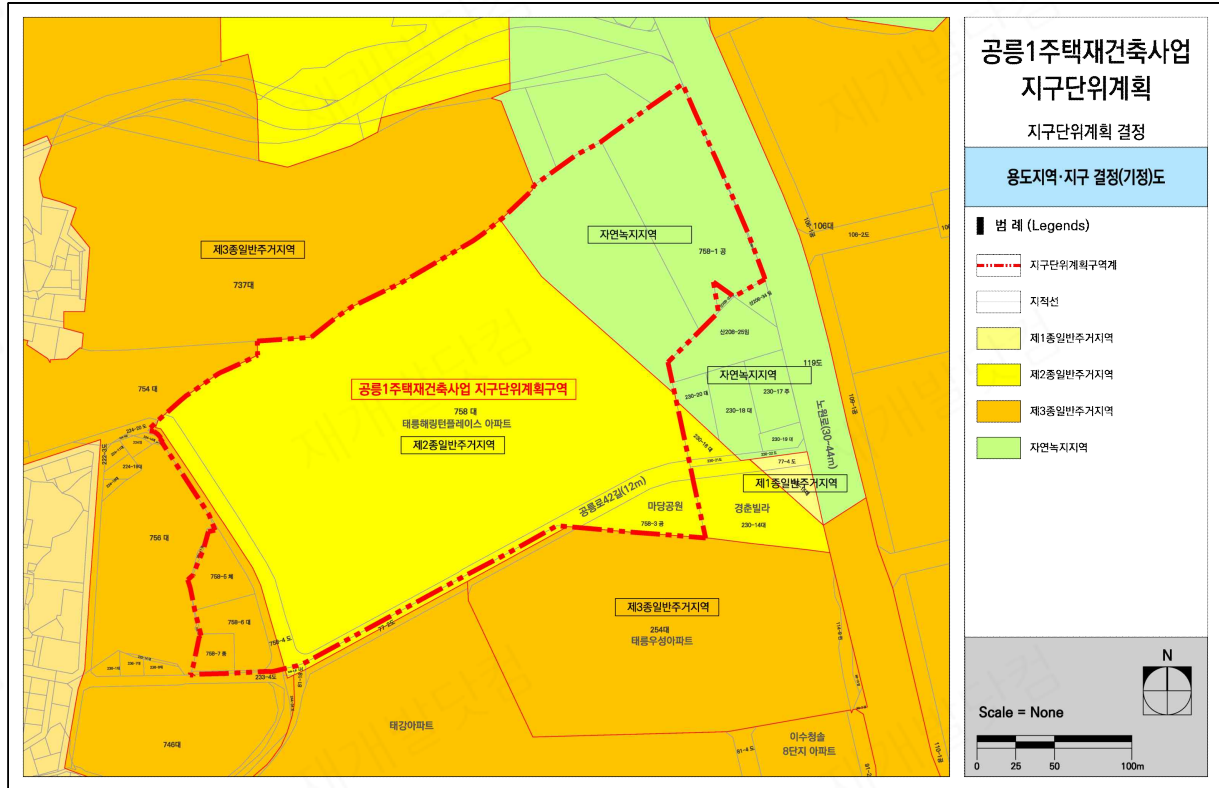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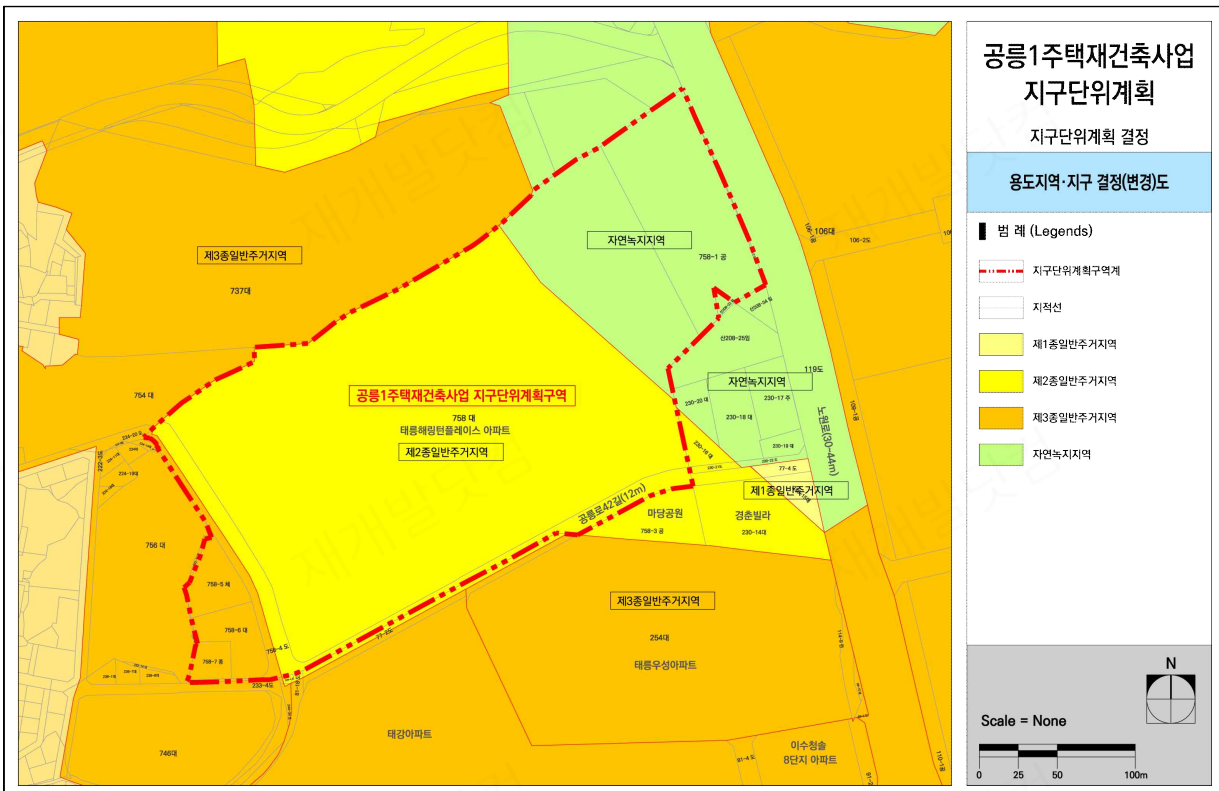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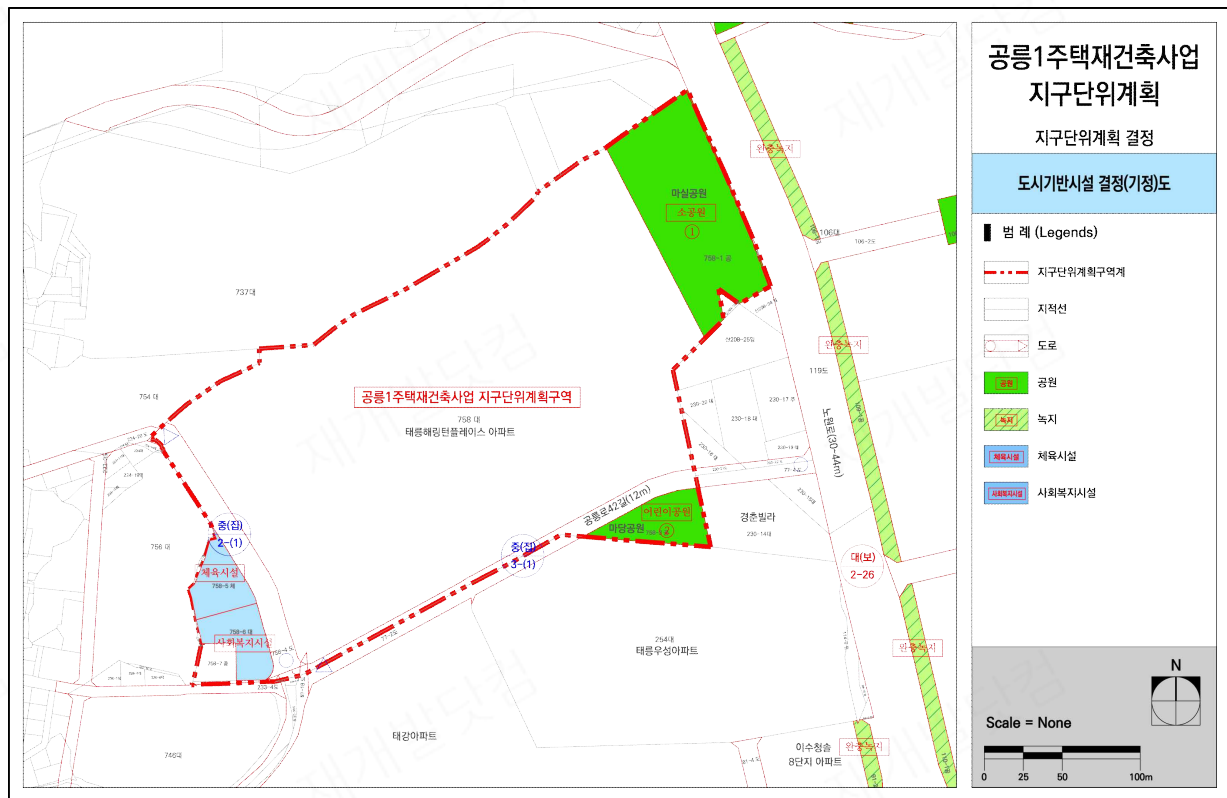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기정)


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변경)

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